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6. 4.
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6월 24일, 김형동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: 2025년 6월 2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
제6차 전체회의(2025. 11. 14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

소위원회

제433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 4. 2.) 상정, 축조심

사,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제434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전체회의(2026. 4. 7.) 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

(대안반영 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: 김형동의원)

고용노동부에 따르면,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으로 101만명에 이르고 있고,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(73.2%)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.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.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에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 이에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호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한석현)

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에서 숨진 23명의 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가 18명에 달하였고,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 산업안전감독 결과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,¹⁾ 외국인근로자 중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지 않아 취업교육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

1)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 결과(2024. 8. 13)

로자가²⁾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,

개정안은 채용 시 교육과는 별개로 사업주가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때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강화하고, 정부가 통역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생 략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생 략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

2) 특히 거주(F-2) 체류자격으로 취업을 한 외국인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

8. 부대의견

없 음

9. 소수의견의 요지

없 음

10. 기타사항

없 음